

독립기념관 채용시험 장애인 편의제공 안내

1. 편의제공 대상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2. 편의제공 신청 절차

가. 편의제공 내용 확인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확인

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사본 제출 : 소정기간 내 시험 편의제공 신청서 **【붙임3】** 및 증빙서류 사본(파일) 온라인 제출(제출방법 전형별 응시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다. 편의제공 여부 결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편의제공여부 개별 안내

라. 증빙서류 원본 대조 : 시험당일 증빙서류 원본 확인

3. 편의제공 내용

편의제공사항	편의제공 내용
별도 문제지	문제지 글자를 확대(118%, 150%) 및 축소(82%) 제작
별도 답안지	답안지 글자 확대(118%, 150%) 및 아라비아 숫자로 답안표기
별도 시험실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별도 시험실 배정 또는 좌석간격 조정
시험시간 연장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험시간 연장(1.5배)
대필	시험 감독관이 답안카드를 기재
장애인보조기구	시험운영과 시험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기구의 사용 허가
도우미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편의제공 도우미를 배치

4. 편의제공 신청 유의사항

가. (확인)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붙임1】**를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증빙서류 확인

나. (증빙)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인정 ※ **【붙임2】** 참조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통해 조회 가능 (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다. (제출) 신청관련 서류는 각 전형별 응시대상자만 제출대상이며, 대상자에게 개별안내 예정으로, 대상자는 안내사항에 따라 소정기간 내 서류 제출

붙임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 편의제공사항은 시험 편의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제공하며, 시험당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를 통한 장애유형 및 정도 확인 후 제공가능 (추가 증빙서류를 요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 사본 사전 제출 및 시험당일 원본 제시 필요)

1. 필기전형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전형	추가 증빙서류
지체장애	상지	공통	· 확대 문제지, 확대 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 시험시간 연장(1.5배) · 답안지 대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6급)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하지		· 휠체어 전용책상	
뇌병변장애	공통		· 확대 문제지, 확대 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책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 시험시간 연장(1.5배) · 답안지 대필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의사진단서(원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각장애	공통		· 확대·축소 문제지, 확대 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 시험시간 연장(1.5배)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1.5배)	의사진단서(원본)
		기타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2-6급)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루 · 요루 장애		· 화장실 이용 가능	의사진단서(원본)

2. 면접전형

장애유형 및 정도		면접전형	추가 증빙서류
지체장애	상지	· 전담 도우미 지원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하지	· 전담 도우미 지원 · 휠체어 전용책상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뇌병변 장애		· 전담 도우미 지원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면접위원 간 거리 근접(1.5m내외) 조정 · 면접시간 1.5배 연장	의사진단서(원본)
시각장애		· 전담 도우미 지원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청각장애	· 보조공학기기(인공와우 등) 착용 허용 · 면접위원 간 거리 근접(1.5m내외) 조정 · 응시요령 등 서면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 면접시간 1.5배 연장		의사진단서(원본)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 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

2. 발급일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3.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나.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사항

다.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

《 의사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시
시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가. 장애유형 및 정도 :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력 : 나쁜 눈 0.02이하, 좋은 눈 교정시력 0.3이하 나. 시험 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다.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가. 장애유형 및 정도 :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증상 :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나. 시험 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필기 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다.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

시험 편의제공 신청서 서식

※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후 소정기간 내 신청서 제출 요망

채용분야		채용전형	☐ 필기전형 ☐ 논술전형 ☐ 면접전형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응시자 : ※ 필수 기재 보호자 : ※ 필요시 기재
주소			
구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증빙서류 (원본 또는 사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의사진단서(원본) ※ 채용시험 당일 지참		
편의제공 요청사항	시험시간 연장	☐ 1.5배	
	별도 문제지 (택1)	☐ 별도 문제지 (☐ 82% ☐ 118% ☐ 150%)	
	별도 답안지 (택1)	☐ 대필 ☐ 별도 답안지 (☐ 118% ☐ 150%)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 허가	☐ 보조기구 명칭() ☐ 보조기구 사용 필요성 :	
	기타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 신청서 기재 시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를 확인 후 해당항목 '□'에 '☑'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시험 편의제공을 신청합니다. 20 . . .			
독립기념관장 귀하 성명(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